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결	기 관 의 장

구 보

제 1339 호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0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07호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08호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19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09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 3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1호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 35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2호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 3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3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47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5호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6호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57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7호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4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훈 령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40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 등 일부 개정훈령) ····· 67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2-277호 (도로구역(구도 312호선, 313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도로: 소로1류14호선, 소로3류601호선)(변경) 고시) ····· 70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1184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3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1185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6

조 례

❑ 제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행정기본법」일부개정(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으로 신설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따라 구 조례 중 나이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나이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 (제1조~제14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0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1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6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만6세”를 “6세”로,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 략) ③ ~ ⑨ (생 략)	제15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5세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조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및 해당 동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8세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관람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	제5조의3(관람료의 면제) ① ----------. ----------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11. 12세 ----------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16. 12세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 ---------- 65세 ------

제6조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 6.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65세 ----------.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65세 ----------. 2.·3. (현행과 같음)

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하여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한다. 가.·나. (생 략) 2. (생 략)	제2조(정의) ----------. 1. ---------- 70세 ----------.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9조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5. (생 략)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 65세 ----- 5. (현행과 같음)

제10조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만 6세 이하의 유아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2.·3. (생 략) ② (생 략)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 1. 6세 ---------- 65세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만6세 미만인 자 또는 만65세 이상인 자 5. (생 략)	제10조(수수료의 면제) ----------. 1. ~ 3. (현행과 같음) 4. 6세 ---------- 65세 ---- 5. (현행과 같음)

제12조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11. (생 략) ② (생 략)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 12세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접종 지원대상은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구민(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다만,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65세 ----------. ----------.

제14조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65세 ----------.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타 자치단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에 맞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를 인상하고 관내 구민의 사용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여 구민의 시설 이용률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간 시설 사용 시간 조정(제10조제1항제1호)

나. 구민 이용사용료 감경 비율 확대 (제17조제4항)

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일부(다목적 체육관) 인상(별표 1)

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전부 인상(별표 2)

마. 실내골프 일일 사용자 항목 폐지(별표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07호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6시”를 “5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수영장	조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1. 토요일 사용 시 공휴일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야간 사용 시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3.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체육관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4. 조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로 갈음한다. 5.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인조 축구장	조간	50,000	100,000	150,000	200,000	
	주간	50,000	100,000	150,000	200,000	
	야간	75,000	150,000	225,000	300,000	
풋살장	조간	20,000	30,000	40,000	60,000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다목적 체육관	조간	33,000	49,500	40,000	60,000	
	주간	33,000	49,500	40,000	60,000	
	야간	49,500	74,250	60,000	90,000	

[별표 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대 상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피트니스	일 일 이용자	성 인	1회 1시간	3,000	
		청소년		2,000	
	등 록 회 원	성 인	주 6회 자유	44,000	
		청소년		34,000	
		어린이		34,000	
수영장	일 일 이용자	성 인	1회 1시간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등 록 회 원	성 인	주 5회 자유	46,000	
		청소년		40,000	
		어린이		35,000	
		성 인	주 3회 강습	60,000	
			주 2회 강습	56,000	
		청소년	주 3회 강습	50,000	
			주 2회 강습	46,000	
		어린이	주 3회 강습	44,000	
			주 2회 강습	40,000	
실내골프	등 록 회 원	성 인	주 5회 자유	110,000	
		청소년		90,000	
		어린이		90,000	
		성 인	주 5회 강습	130,000	
		청소년		110,000	
		어린이		110,000	
다목적 체육관	일 일 이용자	성 인	1일 1회	2,000	* 일일이용자 및 등록회원의 이용시간은 1일 1회 최대 3시간으로 한다.
		청소년		2,000	
		어린이		2,000	
	등 록 회 원	성 인	주 5회 자유	3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30,000	
		성 인	주 3회 강습	44,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0,000	

1.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운영자가 결정·고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용사용자는 그 주소·성명·사용목적·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② ----------. ------ 긴급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다음 각 호의 사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사용시간) ① ----------.
1. 조간: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1. ------ 5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예외로 한다.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2. ----------.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예외로 한다.
제17조(이용사용료의 감경) ① ~ ③ (생 략)	제17조(이용사용료의 감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사람----------.
1.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⑥ ----- 제5항----------.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생 략)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0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 ----------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 체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제27조(준용) ----------

현 행	개 정 안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 운영 조례」----------.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수영장	조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1. 토요일 사용 시 공휴일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야간 사용 시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3.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체육관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4. 조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로 갈음한다. 5.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인조축구장	조간	50,000	100,000	150,000	200,000	
	주간	50,000	100,000	150,000	200,000	
	야간	75,000	150,000	225,000	300,000	
풋살장	조간	20,000	30,000	40,000	60,000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다목적체육관	조간	20,000	30,000	40,000	60,000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별표 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시설별	대상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피트니스	일일이용자	성인	1회 1시간	2,000	
		청소년		1,000	
	등록회원	성인	주 6회 자유	42,000	
		청소년		32,000	
		어린이		32,000	
수영장	일일이용자	성인	1회 1시간	3,500	
		청소년		2,500	
		어린이		2,000	
	등록회원	성인	주 6회 자유	45,000	
		청소년		35,000	
		어린이		30,000	
		성인	주 3회 강습	52,800	
			주 2회 강습	49,500	
		청소년	주 3회 강습	47,300	
			주 2회 강습	44,000	
		어린이	주 3회 강습	41,800	
			주 2회 강습	38,500	
실내골프	일일이용자	성인	1회 90분/1회 1게임	10,000	* 유료존 사용 시 2,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청소년		8,000	
		어린이		8,000	
	등록회원	성인	주 5회 자유	100,000	
		청소년		80,000	
		어린이		80,000	
		성인	주 5회 강습	120,000	
		청소년		100,000	
		어린이		100,000	
다목적체육관	일일이용자	성인	1일 1회	1,500	* 일일이용자 및 등록회원의 이용시간은 1일 1회 최대 3시간으로 한다.
		청소년		1,200	
		어린이		700	
	등록회원	성인	주 6회 자유	21,000	
		청소년		16,800	
		어린이		9,800	
		성인	주 3회 강습	33,000	
		청소년		26,400	
		어린이		15,400	

1.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운영자가 결정 ·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수영장	조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1. 토요일 사용 시 공휴일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야간 사용 시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3.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체육관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4. 조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로 갈음한다. 5.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인조축구장	조간	50,000	100,000	150,000	200,000	
	주간	50,000	100,000	150,000	200,000	
	야간	75,000	150,000	225,000	300,000	
풋살장	조간	20,000	30,000	40,000	60,000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다목적체육관	조간	33,000	49,500	40,000	60,000	
	주간	33,000	49,500	40,000	60,000	
	야간	49,500	74,250	60,000	90,000	

[별표 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시설별	대상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피트니스	일일이용자	성인	1회 1시간	3,000	
		청소년		2,000	
	등록회원	성인	주 6회 자유	44,000	
		청소년		34,000	
		어린이		34,000	
수영장	일일이용자	성인	1회 1시간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등록회원	성인	주 5회 자유	46,000	
		청소년		40,000	
		어린이		35,000	
		성인	주 3회 강습	60,000	
			주 2회 강습	56,000	
		청소년	주 3회 강습	50,000	
			주 2회 강습	46,000	
		어린이	주 3회 강습	44,000	
			주 2회 강습	40,000	
실내골프	등록회원	성인	주 5회 자유	110,000	
		청소년		90,000	
		어린이		90,000	
		성인	주 5회 강습	130,000	
		청소년		110,000	
		어린이		110,000	
다목적체육관	일일이용자	성인	1일 1회	2,000	* 일일이용자 및 등록회원의 이용시간은 1일 1회 최대 3시간으로 한다.
		청소년		2,000	
		어린이		2,000	
	등록회원	성인	주 5회 자유	3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30,000	
		성인	주 3회 강습	44,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0,000	

1.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운영자가 결정 · 고시할 수 있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정사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다. 질서유지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

마. 예산의 지원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제7조)

사. 포상 (제8조)

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08호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2.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상세히 규정하고,「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중복되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1조 ·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지정, 지원사업,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3조∼제6조)

다.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조)

라. 타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 (제14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09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하며 다층 건물의 각 층에 입점한 경우 이 면적은 해당 건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밀집도는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인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출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건물명	주 소	층 수 (지하 / 지상)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 상인회명)가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점 포 명				
② 점 주				
③ 생년월일				
④ 점포주소				
⑤ 업종 및 면적	업종		면적	㎡
⑥ 연 락 처	점 포			
	휴대폰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

2. 대 표 자 성 명 :

3. 소 재 지 :

4. 면 적 / 점 포 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개설일
	규모	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표]

면적당 점포 수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기본	1.5배	2배	n배
면 적	2,000㎡	3,000㎡	4,000㎡	2,000㎡×n
점포 수	30개 이상	45개 이상	60개 이상	30개×n 이상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 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라. 추진사업 및 범위(제5조)

마. 사업지원(제6조)

바. 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7조)

사. 홍보(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시 중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2.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지원
4 사회공헌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 제정사유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제2조)

나.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제3조, 제4조)

다.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제5조)

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제6조)

마.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제7조)

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사업 관련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제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1호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 제정사유

중구의 자연 ·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 제4조)

나. 제2장 경관계획(제5조 ~ 제7조)

다. 제3장 경관사업(제8조 ~ 제13조)

라. 제4장 경관협정(제14조 ~ 제19조)

마. 제5장 사회기반시설 등의 경관심의(제20조, 제21조)

바. 제6장 경관위원회(제22조 ~ 제24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2호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며, 구의 시가지 · 수변 · 자연 ·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의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위반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고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등 특정 경관관리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 설명서, 설계도면 등의 도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 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그 밖의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등 경관심의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층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층수 3층 이상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창고시설로 층수 2층 이상 또는 높이 8미터 이상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구 건축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나. 법 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②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따른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1조제2호 관련)

1. 개항역사 · 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인천항 중점경관관리구역: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용유해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층수 4층 이상이거나 높이 12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4. 무의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층수 4층 이상이거나 높이 12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다. 실태조사 (제4조)

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제5조 ~ 제7조)

마. 재정 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제8조 ~ 제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3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장기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 급증 및 주민 환승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이용 할증요금 기준을 현행 3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장기주차 차량의 수요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특례 중 기준요금의 할증에 관한 사항

(「별표 1」비고 제5호가목)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비 고 －

1. 전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만 적용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서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5. 주차요금의 특례
   가.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표에 따른 기준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비 고 –

1. 전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만 적용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서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5. 주차요금의 특례
   가.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표에 따른 기준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비 고 –

1. 전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만 적용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서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5. 주차요금의 특례
   가.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표에 따른 기준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에 있어 실효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수립 중 일부 조문 수정(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5호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 · 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제18853호, 전부 개정 2022.4.26. 시행 2023.4.27.)에 따라 법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 유실 ·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보호 사업 ·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정비(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라.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시 소유자 등의 대한 관리 감독 · 지도 및 유실 ·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제6조제4호, 제6조제5호)

마. 1인 가구 등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조항 신설(제7조제2항)

바. 기관 ·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조항 신설(제9조)

사.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 지원 조항 신설(제9조)

아. 유실 · 유기동물 입양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제11조 ~ 제12조)

자.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 및 급식소 운영 ·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제13조 ~ 14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6호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의3호”를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5.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1. ---------- 제2조제7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유실 · 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 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 · 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5. 유실 ·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4.・5. (생 략)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 · 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 ·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 · 보호) ① ---- 법 제34조제1항 ----------.
<신 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 ·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 ·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 · 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생 략)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유실 · 유기동물 입양지원) 구청장은 유실 ·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사유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추가 지정(제4조제1항제12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7호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훈 령

□ 제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 등 일부 개정훈령

□ 개정사유

「행정기본법」일부개정(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으로 신설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따라 구 훈령 중 나이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나이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 (제1조~제2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훈령 제40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인천광역시 중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인천광역시 중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동반가족) 해외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다만 동반가족에 대한 일체경비는 파견공무원 본인이 부담한다. 1. (생 략) 2. 만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3. (생 략)	제9조(동반가족) ----------. ----------. 1. (현행과 같음) 2. 18세 ---------- 3. (현행과 같음)

제2조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격요건) ① (생 략) ② 응시자는 신체건강하고 청소 작업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 8. (생 략) ③ (생 략)	제4조(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세 ----------.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고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277호

도로구역(구도 312호선, 313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도로: 소로1류14호선, 소로3류601호선)(변경) 고시

구도 312호선, 313호선【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류14호선, 소로 3류601호선), 사업명: 무의도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사업】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기반시설과☏032-760-8852)에 갖추어 두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2. 12. 30.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요 내용**(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주요 내용**(변경 없음)**

3. 사업내용**(변경)**
   ○ 사 업 명: 무의도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사업
   ○ 위 치
   - 무의동 297-21 ~ 무의동648-2 (소1- 14호선, 본선)
   - 무의동 563 ~ 무의동 517 (소3-601호선, 마을안길)
   ○ 사업규모: L=686m, B=4.0m ~ 10.0m
   ○ 사업기간(변경 전): 도로구역 결정일(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사업기간(변경 후): 도로구역 결정일(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기반시설과)
   ○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중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변경 없음)**

6.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청(기반시설과, ☎ 760- 885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100,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3층]

주 민 의 견 서

사 업 명	무의도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사업	
사업예정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297-21 ~ 무의동 648-2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563 ~ 무의동 517	
의견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184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를 위하여대행기간을 변경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기준을 상향하여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대행기간을 변경함.(안 제8조제2항)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판매 제한수량 신설.(안 제9조제3항)
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100리터 미만으로 제한.(안 제13조제2항)
라.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에서 가정사업계용봉투 75리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30리터 제작 신설 및 사업장생활계용과 모든 종류의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함.(안 별표 4)
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5)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보호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생활청소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호과(생활청소팀)

▷ 전 화 : 032)760-7412 [FAX 032)760-7819]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 견 수 렴 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 출 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185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알기쉬운 용어 사용.(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안 제12조제1항)

다.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에서 가정사업계봉투 75리터를 신설하고 사업장 생활계용 및 100리터 이상의 모든 종량제 봉투 삭제함.(안 별표 2)

라. 별표 4 종량제 봉투 가격산정 기준에서 가정사업계봉투 75리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30리터 신설 및 사업장생활계용과 모든 종류의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삭제함 (안 별표 4)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보호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생활청소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호과(생활청소팀)

▷ 전 화 : 032)760-7412 [FAX 032)760-7819]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 견 수 렴 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 출 인 : (인 또는 서명)			